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국토교통부 | <h1>보 도 자 료</h1> | |  |
| | 배포일시 | 2021. 10. 14.(목) / 총 7매(본문4, 참고3) | |
| 담당 부서 | 건축안전과 | 담당 자 | •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•☎ (044) 201-4989, 4986 |
| 보 도 일 시 | | 2021년 10월 15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5.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 |

안전시설물 없는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, '안전신문고' 에서 직접 신고해 주세요

-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(8.10)에 따른 세부과제 차질 없이 추진 중
- 안전신문고 앱 기능 개선...누구나 손쉽게 신고접수·처리결과 확인

[현행] 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편을 느꼈습니다. A씨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려 했지만 신고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인상을 찌푸린 채 지나갔습니다.

[개정] 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A씨는 횡단보도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별도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 없이 건축물 해체공사가 이루어져 해체 잔재물의 낙하가 걱정되고 소음 및 먼지에 대한 불편을 느꼈습니다. A씨는 휴대폰을 꺼내 '안전신문고 앱'으로 해체 공사장 위험사항을 즉시 신고하였습니다. 신고사항에 대해 공무원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현장점검하였습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지난 8월 10일에 발표한 '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'이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고,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 등 일부 세부과제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.
-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은 지난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후속대책으로서 해체공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당정이 협력하여 발표한 안전강화 대책이며,

- 해체공사 전 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와 국민이 참여하는 해체현장 상시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목표와 세부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.
- 우선,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들께서 직접 위험사항을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‘안전신문고’ 신고 기능을 개선하였다.
- 해체공사 현장 주변의 보행로 또는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이나 해체공사의 먼지 날림방지망을 포함한 각종 안전 시설물 설치 미흡 등에 대해 발견 즉시 ‘안전신문고 앱(App)’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국민들께서 상시감시체계 마련에 대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.
- 또한,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사항 신고접수 시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점검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.

[☞ 안전신문고 앱 사용방법 참고1]

< 해체공사 안전관리 미흡사례 >

| 보행자 보호조치 미흡 (가설울타리 미설치) | 가설울타리 파손 | 낙하물 방지망, 먼지날림 방지망 미설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|  |  |

- 안전신문고 기능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발생한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체공사 현장관리 및 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리자의 업무 수행도와 해체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제도와 시스템도 정비한다.

- 우선, 해체공사 관리자의 업무 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, 현장업무 수행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관리 일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.
- 현재 관리자 교육은 법령 해설을 중심으로 16시간 실시중이나 앞으로는 해체공사 현장과의 정합도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장점검·사고사례 바탕의 안전조치방법, 부실 해체계획서 검토 실습, 교육이수평가 등을 교과내용에 추가하고 교육시간이 35시간으로 확대된다.
- 또한, 해체공사 완료 이후 공사관리일지*를 제출하여 현장관리·감독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지만 관리자가 공사관리 일지*를 매일 온라인 시스템(건축물 생이이력 관리시스템)에 등록하여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고,
 - * 당일 작업공종, 관리내용, 특기사항, 지적사항, 처리결과 등 기재
- 공사관리일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관리자에게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어 관리자의 현장 안전관리·감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현장 관리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.
-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체공사 현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유동인구가 많을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사전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방안도 작성하도록 명확화한다.
- 또한, 보행로나 차도와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해체 잔재물이 전도하거나 낙하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.
- 그리고 연말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편차 수준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“국민들께서 해체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체공사 현장의 위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”면서,
 - “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른 법령 개정과 시스템의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합동점검, 국가 안전대진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해체감리자 교육과 해체계획서 작성 사항 등에 대한 「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」 개정안은 '21.10.15(금)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의 '정책자료 - 법령 정보 - 행정예고'에서 볼 수 있으며, 우편·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※ 제출기간 : '21. 10. 15. ~ 11. 4.(20일간)

제 출 처 : ☎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
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(☎ 044-201-4989, 4986, fax 044-201-5575)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201-498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 안전신문고 앱(App) 설치방법

안전신문고 앱, 이렇게 설치하세요!

안전신문고 앱 설치

1. 구글 Play 스토어 실행 (아이폰은 앱스토어)



2. 안전신문고 앱 검색 및 설치



신고하면
안전해집니다



iOS용 QR코드

*안전신문고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

※ 회원가입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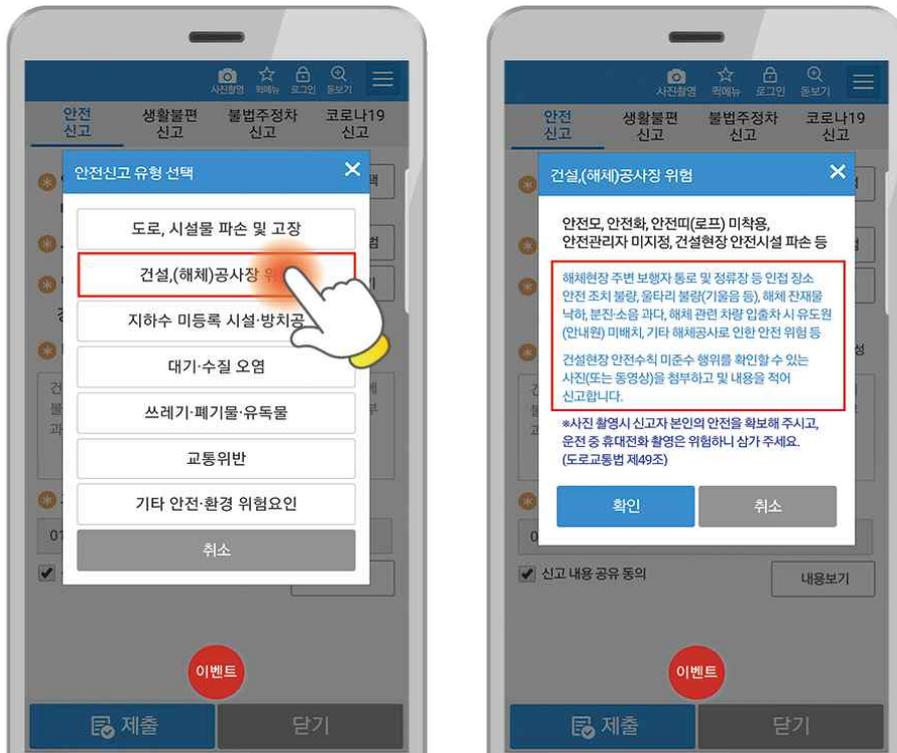


안드로이드용 QR코드

안전신문고 포털(www.safetyeport.go.kr)로 신고하셔도 됩니다.

2 안전신문고 앱(App) 사용방법

1. 유형선택 ▶ 건설(해체)공사장 위험 선택



2. 위험요인 사진/ 위치 입력 ▶ 신고내용 작성/ 제출



◆ 주변 보호조치 미흡



· 버스정류장 보호조치 미흡 ·



· 보행자 보호조치 미흡 ·

◆ 가설울타리 관리 미흡



· 가설울타리 기울음 ·



· 가설울타리 파손 ·



· 가설울타리 설치 미흡 ·

◆ 해체잔재물 낙하, 분진, 소음방지 조치 미흡



· 낙하물방지망, 분진망 미설치 ·



· 가설방음벽 미설치 ·